

2022년도
상촌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2. 3. 28. ~ 3. 31.(4일간) / 2019. 2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6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6건 (주의 8건, 시정 8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2건 / 112,0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 없음

《 수범사례 》

■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및 군정홍보 게시판 제작

-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민원실 창구와 면사무소 입구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주민행정서비스 구현

■ 면사무소 입구에 대형전광판 설치

- 주민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 및 군정 홍보사항 신속 제공

■ 상촌e음 활용하여 적극행정 추진

- 실시간 전자공문함을 통해 마을별 홍보사항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

- 붙임 1. 주요 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6부. 끝.

상촌면 감사결과 처분사항(총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총 16건	주의 8 시정 8		2건 112,000원
1	◦ 당직근무자 근무일지 작성 소홀	주의		
2	◦ 신용카드 발급대장 작성 소홀	시정		
3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시정		
4	◦ 공금계좌(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 미준수	주의		
5	◦ 공공예금계좌 개설 부적정	시정		
6	◦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	주의		
7	◦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시정		
8	◦ 지역민방위대 통합편성 및 관리 소홀	시정		
9	◦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세입조치 소홀	주의		
10	◦ 인증기용 증지수입 세입처리 지연	주의		
11	◦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업무 소홀	주의		
12	◦ 장수수당 지급업무 소홀	시정		회수 30,000원
13	◦ 표시기간 만료된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시정		
14	◦ 산불감시원 선발에 관한 사항	주의		
15	◦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16	◦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검토 및 사후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82,000원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자 근무일지 작성 소홀

【현 황】

○ 당직근무자 근무일지 미작성 현황

근무일자	당직근무일지 작성 여부	당직자		비고
		직급	성명	
2021.01.24.	부	****	A	
2021.02.05.	부	****	A	
2021.02.24.	부	****	B	
2021.03.15.	부	****	B	
2021.05.15.	부	****	A	
2021.05.18.	부	****	C	
2021.06.04.	부	****	D	
2021.06.06.	부	****	E	
2021.06.19.	부	****	C	
2021.06.29.	부	****	A	
2021.07.07.	부	****	A	
2021.08.01.	부	****	A	
2021.08.11.	부	****	A	
2021.08.19.	부	****	F	
2021.08.24.	부	****	G	
2021.09.15.	부	****	E	
2021.09.22.	부	****	G	
2021.10.24.	부	****	A	
2021.11.15.	부	****	H	
2021.11.19.	부	****	A	
2021.11.29.	부	****	I	
2021.12.17.	부	****	A	
2022.01.15.	부	****	A	
2022.01.21.	부	****	A	
2022.01.24.	부	****	B	작성은 하였으나, 1.25.로 날짜오기
2022.02.25.	부	****	A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당직의 구분)에 의하면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제8조 제3항에 따라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결과 상황보고(야간 사건사고 발생 상황,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함.
 - ※ 제19조에 따라 군의 직속기관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준용
- 그러나, 2021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상촌면에서의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황]과 같이 A외 9명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음.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발급대장 작성 소홀

【현 황】

○ 법인카드 현황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용도	발급대장 등재여부	비고
	직	성명			
*****-*****-*****92	****	J	법인카드	부	
*****-*****-*****08	****	J	유류구매카드	부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따라서 상촌면에서는 법인카드를 발급하거나 인사이동에 의해

보관책임자가 교체된 경우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나 2013년 8월 이후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한 내역이 없음.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누락된 신용카드 발급대장 내역을 정비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현 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도	집행내역	지급일	지급액	계획수립 여부	비고
2019년	직원 생일 축하를 위한 영동사랑상품권 구입	2019.02.20.	680,000원	여	
2020년	직원 생일 축하를 위한 영동사랑상품권 구입	2020.02.04.	680,000원	부	
2021년	직원 생일 축하를 위한 영동사랑상품권 구입	2021.01.08.	680,000원	부	
2022년	생일축하수당 지급	2022.02.23.	200,000원	부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해야 하며,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함.
- 또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촌면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 생일 축하를 위한 영동사랑상품권을 매년 680,000원씩 구입하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2022년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금계좌(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 미준수

【현 황】

○ 공금계좌 이용대금 결제일 지연 내역

카드사용일	사용 내역	금액(원)	신용카드 결제일	e호조 지출일	비고
2020.11.01. ~ 2020.11.15.	관용차 및 청소차량 유류대 지급(4건)	233,050	2020.11.23.	2020.12.15.	22일
2020.11.16. ~ 2020.11.30.	관용차 및 청소차량 유류대 지급(6건)	628,840	2020.12.07.	2020.12.15.	8일
2021.04.01. ~ 2021.04.15.	관용차 및 청소차량 유류대 지급(6건)	526,770	2021.04.22.	2021.05.10.	18일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지방자치단체 구매 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의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카드결제의 경우 결제일 이전, 자동이체의 경우 출금일 이전에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제 계좌에 대금을 이체하여야 하나,

- 상촌면에서는 ‘관용차 및 청소차량 유류대 지급’ 16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일로부터 8일~22일이 지난 시점에 집행하는 등 공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공예금 계좌 개설 부적정

【현 황】

1. 공공예금계좌(식당운영비) 운영현황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설일자	사용용도	비고
-*-****-73	상촌****	2009.03.17.	식당운영비	체크카드 발급·사용 (발급일 2021.01.22.)

2. 자치단체 구매카드(식당운영비) 휴일 결제내역

카드번호	휴일결제건수	사용지역	사용용도	비고
****-****-****-573	47건*	영동, 옥천, 김천 등	점심식사재료비	21.1.22.~22.3.31.까지 사용내역

* 청백-e 시스템 예방모니터링(자치단체 구매카드 부적정 사용방지) 중 시간외 사용내역 추출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의 투명한 처리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령에 근거한 예산에 한해서 각 기관 및 기관명의 고유번호, 예금주로 계좌를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공인을 인감으로 하여 개설하는 공공계좌는 사용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또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여야 함.

- 그러나, 상촌면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식당운영비 계좌를 법령에 근거 없이 기관명과 공인을 사용하여 공공계좌로 개설·운영하였을 뿐 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청사관리 기간제)에게 카드를 관리·사용하게 하여 **【현황 2】**와 같이 담당 공무원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주말에 식재료비 구입을 하게 하는 등 금전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계좌 및 카드를 부적정하게 운영함.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식당운영비 계좌의 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정비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

【현 황】

○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현황

구분	위임자	직무대리	지정기간	비고
지급명령승인	K (지출원)	L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2021.06.18.~06.19.	지출원 및 현금출납 직무는 겸직 불가
지급명령승인	M (지출원)	N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2021.03.29.~04.02.	
지급명령승인	M (지출원)	N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2021.10.28.~10.29.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의 규정에 따르면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음.
- 그러나 상촌면에서는 재무관 또는 지출원 부재 시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 지정을 하면서, 지출원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나 위 현황과 같이 지급명령승인을 위한 지출원 직무를 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 직무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현 황】

1. 수당지급일 부적정 내역

(단위:천원)

적 요	채 권 자	지급명령 번호	정당지급일	실지급일	지급액	비고
2019년 5월 이장수당	○○○외 20	00000200	2019.05.20.	2019.05.21.	4,200	1일 지연지급
2019년 6월 이장수당	○○○외 20	00000248	2019.06.20.	2019.06.19.	4,200	1일 조기지급
2019년 9월 이장수당	○○○외 20	00000387	2019.09.20.	2019.10.04.	4,200	9일 지연지급
2019년 10월 이장수당	○○○외 20	00000419	2019.10.18.	2019.10.15.	4,200	3일 조기지급
2019년 11월 이장수당	○○○외 20	00000470	2019.11.20.	2019.11.19.	4,200	1일 조기지급
2020년 7월 이장수당	○○○외 20	00000315	2020.07.20.	2020.07.21.	6,300	1일 지연지급
2020년 8월 이장수당	○○○외 20	00000376	2020.08.20.	2020.08.19.	6,300	1일 조기지급
2021년 7월 이장수당	○○○외 20	00000335	2021.07.20.	2021.07.21.	6,300	1일 지연지급

2. 이장 월정수당 부적정 지급내역

지급대상자	변경일자	지급월	수당지급액	정당지급액	비고
전) □□리장 ○○○	20.01.10.	20년 1월	-	87,100원	
현) □□리장 ○○○		20년 1월	300,000원	212,900원	
전) □□리장 ○○○	20.01.10.	20년 1월	-	87,100원	
현) □□리장 ○○○		20년 1월	300,000원	212,900원	
전) □□리장 ○○○	21.01.04.	21년 1월	-	29,030원	
현) □□리장 ○○○		21년 1월	300,000원	270,970원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따라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8-2. 통장·리장·반장활동보상금(301-05)에 따르면 통·리장·반장의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에 지급하며, 통·리장 변경 시에는 기본수당 등을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촌면에서는 19년 5월 외 7건의 이장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하지 않고 1일에서 9일까지 조기 또는 지연 지급하였으며, 이장 변경일에 따라 기본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적정하나 후임이장에게 일괄지급 하는 등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이장 월정수당을 일할계산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 민방위대 통합편성 및 관리 소홀

【현 황】

○ 지역민방위대 편성현황

민방위대명	대장정보		대원수	비고
	성명	임명일자		
9개	9명		37명	
상촌면 □□1리, □□2리, △△리 민방위대(통합대)	○○○	2018.03.12.	9	
상촌면 □□,△△리 민방위대(통합대)	○○○	2020.01.10.	3	
상촌면 □□1,△△리 민방위대(통합대)	○○○	2020.01.10.	3	
상촌면 □□,△△리 민방위대(통합대)	○○○	2021.03.03.	7	
상촌면 □□,△△,◇◇민방위대(통합대)	○○○	2021.03.17.	1	
상촌면 □□2,△△△,◇◇1리 민방위대(통합대)	○○○	2018.03.12.	3	
상촌면 □□,△△2리 민방위대(통합대)	○○○	2018.03.12.	2	
상촌면 □,△△△리 민방위대(통합대)	○○○	2018.03.12.	5	22.1.3일자 이장변경(○○○)
상촌면 □□1,2리 민방위대(통합대)	○○○	2019.01.11.	4	

【위법부당사항】

-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제1항에 따르면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로 편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민방위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리 민방위대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제6항에 의하면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하고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지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대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상촌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상촌면 지역민방위 대원수는 총 37명이고 □□1·2리, △△리 통합 민방위대 외 8개 민방위대의 대원수가 1~9명인 소규모 민방위대인데도 인근 통·리 민방위대와 적정 통합편성하여 운영하지 않았으며,
- ◇·◇◇◇리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22. 1. 3일자로 이장이 변경되어 신규 임명한 이장으로 민방위대장을 변경 및 편성해야하나, 해당 리 민방위대 대장으로 편성하지 않는 등 지역민방위대 편성·관리에 소홀함.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지역민방위대를 적정하게 편성 및 관리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세입조치 소홀

【현 황】

○ 지연처리내역(감사대상 기간 중 2021년 10월~12월 신고분 표본 추출)

연번	신고일	신고자	금액	수납일	지연일	비고
합계			425,000			
1	2021.10.11. ~ 2021.10.12.	○○○ 외2	27,000	2021-10-14	1일	
2	2021.10.14. ~ 2021.10.18.	○○○ 외1	38,000	2021-10-18	1일	
3	2021.10.18. ~ 2021.10.21.	○○○ 외4	29,000	2021-10-25	1일~4일	
4	2021.10.23. ~ 2021.10.27.	○○○ 외4	23,000	2021-10-29	1일~4일	
5	2021.11.01. ~ 2021.11.05.	○○○ 외9	132,000	2021-11-05	1일~3일	
6	2021.11.08. ~ 2021.11.11.	○○○ 외1	23,000	2021-11-12	1일~3일	
7	2021.11.15. ~ 2021.11.17.	○○○ 외3	43,000	2021-11-18	1일~2일	
8	2021.11.18. ~ 2021.11.22.	○○○ 외3	17,000	2021-11-22	1일	
9	2021.11.22. ~ 2021.11.25.	○○○ 외7	42,000	2021-11-29	1일~4일	
10	2021.11.29. ~ 2021.12.02.	○○○ 외6	51,000	2021-12-03	1일~3일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은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등을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신고 하여 별표2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6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토록 되어 있음.

- 아울러,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수입금의 납입)에 따르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 그러나 상춘면에서는 민원인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징수한 수수료를 즉시 징수결의 절차를 거쳐 수납한 날의 다음 날에 금고에 납입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중 2021년도 10월~12월에만 총 10건, 총425,000원의 수입금 납입을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상춘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인증기용 증지수입 세입처리 지연

【현 황】

○ 세입처리 지연 내역

연번	부과대상일	금액(원)	세입처리일	지연일	비고
합계		308,800			
1	2021.02.01.~02.04.	4,800	2021.02.05.	3	지방세 제증명
2	2021.03.11.~03.12.	7,200	2021.03.15.	1	지방세 제증명
3	2021.03.15.~03.16.	11,200	2021.03.17.	1	지방세 제증명
4	2021.03.22.~03.23.	10,400	2021.03.24.	1	지방세 제증명
5	2021.03.26.~03.30.	10,400	2021.03.31.	2	지방세 제증명
6	2021.03.30.~04.02.	6,400	2021.04.06.	4	지방세 제증명
7	2021.04.06.~04.08.	5,600	2021.04.09.	2	지방세 제증명
8	2021.04.09.~04.13.	16,800	2021.04.14.	2	지방세 제증명
9	2021.04.14.~04.15.	2,400	2021.04.19.	2	지방세 제증명
10	2021.04.20.~04.29.	16,000	2021.04.30.	7	지방세 제증명
11	2021.04.30.~05.04.	7,200	2021.05.06.	2	지방세 제증명
12	2021.05.06.~05.07.	8,800	2021.05.10.	1	지방세 제증명
13	2021.05.10.~05.12.	12,000	2021.05.13.	2	지방세 제증명
14	2021.05.13.~05.17.	9,600	2021.05.18.	2	지방세 제증명
15	2021.05.18.~05.24.	12,800	2021.05.25.	3	지방세 제증명
16	2021.05.25.~05.26.	8,000	2021.05.27.	1	지방세 제증명
17	2021.05.27.~05.28.	6,400	2021.05.31.	1	지방세 제증명
18	2021.05.31.~06.03.	4,800	2021.06.04.	3	지방세 제증명
19	2021.06.04.~06.08.	2,400	2021.06.09.	2	지방세 제증명
20	2021.06.09.~06.24.	11,200	2021.06.28.	10	지방세 제증명
21	2021.06.25.~06.29.	1,600	2021.06.30.	2	지방세 제증명
22	2021.06.30.~07.02.	4,000	2021.07.05.	2	지방세 제증명
23	2021.08.17.	800	2021.08.19.	1	지방세 제증명
24	2021.08.20.	4,000	2021.08.25.	2	지방세 제증명
25	2021.08.25.	2,400	2021.08.27.	1	지방세 제증명
26	2021.09.01.	800	2021.09.06.	2	지방세 제증명
27	2021.09.02.	1,600	2021.09.06.	1	지방세 제증명
28	2021.09.07.	800	2021.09.14.	4	지방세 제증명
29	2021.09.14.	800	2021.09.17.	2	지방세 제증명
30	2021.09.17.	800	2021.09.27.	2	지방세 제증명
31	2021.09.23.	800	2021.09.27.	1	지방세 제증명

연번	부과대상일	금액(원)	세입처리일	지연일	비고
32	2021.11.18.	10,000	2021.11.22.	1	민원실
33	2021.11.22.	800	2021.11.25.	2	지방세 제증명
34	2021.11.30.	800	2021.12.06.	3	지방세 제증명
35	2021.12.01.	800	2021.12.06.	2	지방세 제증명
36	2021.12.15.	25,800	2021.12.20.	2	민원실
37	2021.12.16.	13,300	2021.12.20.	1	민원실
38	2021.12.20.	1,600	2021.12.23.	2	지방세 제증명
39	2021.12.24.	26,700	2021.12.29.	2	민원실
40	2021.12.27.	19,500	2021.12.29.	2	민원실
41	2021.12.28.	16,700	2021.12.30.	1	민원실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17조(요금 표시기 및 무인발급기 · 각 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따르면 판매한 증지 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각 수입금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아울러,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입금의 납입)에 의하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 그러나 상촌면의 2021년 세입처리내역을 점검한 결과, 위 현황에서와 같이 제증명 등의 인증기 수입을 매일 정산하여 지방세의 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해 세입처리 함에 있어 41건, 308,800원에 대하여 최소 1일에서 최대 10일 동안 지연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업무 소홀

【현 황】

○ 장애인 재판정대상자 통보 현황

연번	대상자			재진단 기한	재진단일	통보내역		비고
	성명	주소	장애 유형			통보서 발송일	촉구서 발송일	
1	○○○	□□□길	뇌병변	21.06.13.	21.08.26.	-	-	74일 지연
2	○○○	□□3길	신장	21.10.21.	21.10.19.	-	-	
3	○○○	□□길	호흡기	21.11.27.	21.11.10.	21.10.19.	-	
4	○○○	□□로	뇌병변	21.11.27.	21.11.10.	21.10.19.	-	

【위법부당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군수는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장애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음.

○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1) 2-3 등록장애인 사후관리 재판정 절차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고,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서식 7)를 통지하여 1개월 이내에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며, 재판정 통보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재판정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한을 확인 후 3개월 후로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 그러나, 상촌면에서는 장애인 등급 재판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애인 재판정 대상 장애인에게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하여 재판정을 안내하여야 하나, 4건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일 3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하여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재진단 기한이 74일이나 경과된 후 재진단 받는 등 장애인 재판정 통보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장수수당 지급업무 소홀

【현 황】

○ 장수수당 과다지급 내역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최종 수당지급내역		비고
			지급월	지급액	
○○○	**.*.*	2020.12.28.	2021.1월	30,000원	

【위법부당사항】

○ 장수수당이란,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193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상촌면에서는 위 【현황】 과 같이 2020.12.28.사망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망일이 속한 2020년 12월까지 지급 후 지급중지하여야 하나, 1개월분 30,000원을 과다지급하였으며, 과다지급분에 대하여 환수조치하지 않음.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과다지급된 장수수당 30,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표시기간 만료된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현 황】

○ 기간만료 광고물 현황

연 번	업소명	광고물종류	표시시작일자	표시종료일자	안전도검사 대상여부	비고
1	□□□□□□□□	지주이용간판	2017.09.05.	2020.09.04.		높이미등록
2	□□□□□□	돌출간판	2017.05.15.	2020.05.14.	여	
3	□□□□□	지주이용간판	2017.05.19.	2020.05.18.	여	
4	□□□□□	지주이용간판	2017.04.11.	2020.04.10.	여	
5	□□□□	지주이용간판	2017.05.19.	2020.05.18.	여	
6	□□□□	지주이용간판	2017.04.17.	2020.04.16.	여	
7	□□□펜션	지주이용간판	2017.04.08.	2020.04.07.		
8	□□식당	지주이용간판	2017.04.11.	2020.04.10.	여	
9	□□□□식당	지주이용간판	2017.04.25.	2020.04.24.	여	
10	□□□□식당	지주이용간판	2017.05.29.	2020.05.28.	여	
11	□□맛집	지주이용간판	2017.05.23.	2020.05.22.	여	
12	□□식당	지주이용간판	2017.05.16.	2020.05.15.	여	
13	□□가든	지주이용간판	2017.05.16.	2020.05.15.	여	
14	□□□	지주이용간판	2017.05.16.	2020.05.15.	여	
15	□□□□식당	지주이용간판	2017.05.16.	2020.05.15.	여	
16	□□□□식당	돌출간판	2017.05.16.	2020.05.15.		
17	□□□□식당	지주이용간판	2017.05.16.	2020.05.15.	여	
18	□□□	지주이용간판	2017.05.16.	2020.05.15.	여	
19	□□□	지주이용간판	2017.05.15.	2020.05.14.		
20	□□□□식당	지주이용간판	2017.05.23.	2020.05.22.		
21	□□□□□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7.04.08.	2020.04.07.	여	

【위법부당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및 제9조(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하며,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함.
-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에 따른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군수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은 “군수는 법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관리자 등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상촌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만료 광고물 21건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신고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알리고 연장허가 및 신고처리 되도록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으며, 이 중 16건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해당되어 공중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감사대상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연장처리 관련 행정처리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기간 만료된 광고물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불감시원 선발에 관한 사항

【현 황】

1. 산불감시원 선발계획 수립현황

연 도	사업명	선발계획 수립여부	비 고
2019	봄·가을철 산불감시원	부	
2020	봄·가을철 산불감시원	부	
2021	봄·가을철 산불감시원	부	
2022	봄·가을철 산불감시원	부	

2. 산불감시원 서류심사 기준

항 목	선발기준	배 점		비 고
근무여건 (10)	차량종류 (5)	화물차	5	서류심사 총점 40점
		승용차	3	
		없 음	1	
	소유여부 (5)	본인소유	5	
		가족소유	0	

※ 상촌면 산불감시원 선발기준 및 배점 재구성

3. 중복참여 산불감시원 현황

근로자명	생년월일	근로사업명	근로기간	비 고
A	**.**.*.	봄·가을철 산불감시원	- 2019.02.01. ~ 05.15. - 2019.11.01. ~ 12.13.	1회
		봄·가을철 산불감시원	- 2020.02.01. ~ 05.15. - 2020.11.01. ~ 12.15.	2회
		봄·가을철 산불감시원	- 2021.02.01. ~ 05.15. - 2021.11.01. ~ 12.15.	3회/ 감점 미반영
		봄·가을철 산불감시원	- 2022.02.01. ~ 05.15.	4회/ 감점 미반영

【위법부당사항】

1. 산불감시원 자체 선발계획 미수립

- 매년 산불예방을 위한 봄·가을철 산불감시원(기동, 초소)을 선발함에 있어 각 읍·면에서는 군에서 배포되는 「산불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라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선발인원, 근무기간, 응시자격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응시자 모집 이전에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후 산불감시원을 선발하여야 함.
- 그러나, 상촌면에서는 **【현황 1】** 과 같이 산불감시원 선발공고 전에 별도의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감시원을 모집하였음.

2. 산불감시원 선발기준 부적정

- 상촌면 산불감시원 모집공고에 따르면 자동차, 오토바이, 휴대폰등을 보유하고 있어 산불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우대선발하고 중복 및 반복참여를 제한하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 시 선발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공고함.
- 그러나, 모집 신청서 상 근무여건 항목에 자동차(또는 오토바이) 보유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현황 2】** 와 같이 선발기준에는 차량종류를 화물차(봉고차), 승용차로 한정하여 배점을 하였으며, 해당 차량이 본인 소유인지 가족 소유인지는 해당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필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발기준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현황 3】** 과 같이 2019 ~ 2022년간 선발된 산불감시원 A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최근 3년간 3회 이상 참여하여 총점 감점 대상이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매년 심사 결과상 동점자가 발생함에도 동점자에 대한 선발절차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현 황】

○ 사업대상자 선정현황

보 조 사업명	대상자		사업 량	사 업 대상지	사 업 비(천원)			수요조사 참여여부	비고
	주소	성명			계	보조	자담		
포도비 가림	□□ □길	B	0.25h a	□□리 291,292, 293	11,024	5,500	5,524	부	'20.11월 비가림사업 포기
	□□ 3길	C	0.17h a	□□리 629	9,335	3,740	5,595	여	
	□□□ 3길	D	0.41h a	□□□리 101, 101-1	18,268	9,020	9,248	여	
하우스 자동개 폐기	□□길	E	12개	□□리 548,550	1,800	900	900	여	'21.3.17일 까지 제외농가 (폐업)
	□□길	F	12개	□□리 777	1,800	900	900	여	

【위법부당사항】

<사업대상자 선정 관련>

○ 영동군 농정과에서 시달한 「2021년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계획 알림(농정과-4659, 2021.01.26.)」 호에 따르면,

○ 사업대상자 선정시 사업대상지가 공부와의 일치여부, 실제 영농

가능여부, 자부담 능력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및 청년 농업인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 더불어,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공공기관 근무자, 체납자, 최근 3년간 포기자 및 '15~'16년 FTA폐업지원 농가 등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촌면에서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내 세부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위 선정기준과 제외대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을 했어야 함.
- 그러나, 【사업대상자 선정현황】에서 포도비가림 사업의 경우, 2021. 2월 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C 등 5명의 신청자 중, C와 D를 선정하고 ○○○외 2명은 후순위자로 정하였으나, ○○○은 사업포기, ○○○은 자부담 설치하여 제외하였으며 ○○○이 후순위자로 있었음에도 포도비가림 추가 사업이 배정된 후, 심의 대상에도 없었고 이미 전년도에 비가림 사업을 일신상의 사유로 포기한 A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은 2022년 포도간이비가림 사업대상자로 선정됨)
- 또한, 하우스 자동개폐기 사업의 경우, F는 '15. 3. 18. FTA 시설 포도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21. 3. 17.까지 제외대상임에도, 제외 대상기간중인 '21. 2. 8. 과수 및 농정분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대상자 2명에 포함하여 심의한 결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 위와 같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관련>

- 본 사업의 군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각

읍면별로 자체 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하여 그 결과를 군 농정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군 지침에 별도 안내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회피하여 심의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상촌면에서는 과수 및 농정분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2021. 2. 8. 총7명 및 2022. 1. 11. 총5명으로 각각 구성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였음.
- 2021년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인 □□□□□□작목반장 ○○
○이 본인이 신청한 과일운반상자 사업대상자로, 2022년 심의위원회에는 □□□□회 회장 ◎◎◎이 신청한 포도간이비가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심의에 참여하였으며, 두 명 모두 최종 선정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검토 및 사후정산 부적정

【현 황】

(단위: 원)

공사명	도급액 (천원)	도급자	계 약 일 착 공 일 준 공 일	원가계산서 상 간접공사비			회수금액	비고
				비 목	예정가격 (설계금액)	계약가격 (착공금액)		
계							82,000	제경비 포함
□□리 농로포장공사	13,200	㈜□□건설 ○○○	2021.04.28. 2021.05.03. 2021.06.08.	건강보험료	160,411	145,328	△ 15,083	
				연금보험료	210,452	190,664	△ 19,78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479	16,741	△ 1,73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8,273	243,032	△ 25,241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착공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착공내역

서)에 별도로(금액조정 없이)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상촌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은 착공내역서 상 원가계산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낙찰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계상·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나 공사감독자 모두 이를 제대로 확인 검토하지 않아 준공 시 까지 잘못된 금액으로 정산처리하여 금액 82,0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상촌면장은 과다지급된 공사비 82,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